

공 보

제693호 2019. 4. 17.(수)

선 결	기관의 장

훈 령

거창군 훈령 제430호 거창군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공무원 교환근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3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9-41호 도로명주소 고시 6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9-501호 거창군 자원봉사센터장 선임 계획 공고 8

거창군 공고 제2019-502호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8

거창군 공고 제2019-506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32

거창군 공고 제2019-513호 2019년 간선임도(가조 사병-수월지구) 신설공사
공시송달 공고 33

거창군 공고 제2019-517호 거창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따른
열람 공고 35

회 계									
--------	--	--	--	--	--	--	--	--	--

발행 : 거창군 /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거창군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공무원 교환근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창군수

서명생략

2019년 4월 17일

거창군 훈령 제430호

거창군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공무원 교환근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공무원 교환근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군”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로”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우리 군에 5년”을 “군에 3년”으로 “우선한다.”를 “우선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를 “한다)”로 “자”를 “사람”으로 “자로 한다.”를 “사람으로 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용어의 <u>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파견"이란 <u>군</u> 소속 공무원을 외국지방자치단체에 근무(「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에 의한 파견제외)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파견공무원이라 한다.</p> <p>2.~3.(생략)</p> <p>제7조(선발자격 기준) ① 선발에 응할 수 있는 <u>자</u>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u>자</u>로 한다. 다만, 파견대상 외국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1. <u>우리 군에 5년</u> 이상 근무한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상위 직급자를 <u>우선한다.</u></p> <p>2. 파견대상 지역의 일상생활 언어를 구사할 능력이 있는 <u>자</u>로 하되, 파견대상국의 국어(이하 "외국어"라 <u>한다.</u>) 능력자격증을 소지한 <u>자</u>, 외국어 전문교육을 이수한 <u>자</u>, 최근 학습노력 및 회화능력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u>자</u>로 <u>한다.</u> 다만, 동일자격의 복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분야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한다.</p> <p>3. 국가관이 투철하고 심신이 건전하며, 군 지역발전과 국제화 역량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고 의욕적으로 일하는 <u>자</u></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는 제외한다.</p> <p>1. 6개월 이상의 해외연수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u>자</u></p> <p>2. 추천일 현재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u>자</u></p> <p>3. 파견근무 종료 후 3년 이상 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u>자</u></p> <p>4. 해외근무에 결격사유가 있는 <u>자</u></p>	<p>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용어의 <u>뜻은 다음과 같다.</u></p> <p>1. "파견"이란 <u>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u> 소속 공무원을 외국지방자치단체에 근무(「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에 의한 파견제외)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파견공무원이라 한다.</p> <p>2.~3.(현행과 같음)</p> <p>제7조(선발자격 기준) ① 선발에 응할 수 있는 <u>사람은</u>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u>사람으로</u> 한다. 다만, 파견대상 외국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1. <u>군에 3년</u> 이상 근무한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상위 직급자를 <u>우선함</u></p> <p>2. 파견대상 지역의 일상생활 언어를 구사할 능력이 있는 <u>사람으로</u> 하되, 파견대상국의 국어(이하 "외국어"라 <u>한다.</u>) 능력자격증을 소지한 <u>사람</u>, 외국어 전문교육을 이수한 <u>사람</u>, 최근 학습노력 및 회화능력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u>사람으로 함.</u> 다만, 동일자격의 복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분야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한다.</p> <p>3. 국가관이 투철하고 심신이 건전하며, 군 지역발전과 국제화 역량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고 의욕적으로 일하는 <u>사람</u></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람은</u> 제외한다.</p> <p>1. 6개월 이상의 해외연수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u>사람</u></p> <p>2. 추천일 현재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u>사람</u></p> <p>3. 파견근무 종료 후 3년 이상 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u>사람</u></p> <p>4. 해외근무에 결격사유가 있는 <u>사람</u></p>

1. 제안이유

해외 파견근무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더 많은 직원들의 참여로 국제 우호도시와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지방 행정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외 파견대상자의 선발자격 기준 완화(안 제7조)

1) 군에 5년 이상 근무한 군 소속 공무원

⇒ 3년 이상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17.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8 등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2)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8	2009-07-02	2019-04-17	행정구역명(거창+함양군) 활용	
2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창선리 210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덕유월성로 1928-42	2009-07-02	2019-04-17	지명(덕유산+월성계곡) 활용	
3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 1-1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어인길 440-5	2009-04-01	2019-04-17	어인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382-16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산2길 64	2009-04-01	2019-04-17	중산길의 시점으로부터 두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거창군 자원봉사센터장 선임 계획 공고

거창군 자원봉사센터장 선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거창군수

1. 선임개요

선임부서	선임분야	선임인원	선임기간	담당업무
복지정책과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1명	2019. 5. 9. ~ 2022. 5.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와 관련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역할과 책임

2. 근무조건

- 가. 신 분 : 민간인 센터장
- 나. 선임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 다. 급 여 : 월 1,000,000원(4대 보험료 포함)
- 라. 근무조건 : 주5일, 1일 4시간 근무
- 마. 업무내용
 - 지역자원봉사단체, 타자원봉사센터, 유관기관 등 자원봉사와 관련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조직과 인사관리, 예산확보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역할과 책임
- 바. 근무부서 : 거창군 자원봉사센터

3. 심사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와 ‘직무분야 자격 요건’ 적격성 여부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인별 통지

나. 2차 면접시험

- 서류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진행(개인별 통지)
- 평정요소별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준으로 심사위원이 채점표를 작성하여 최고득점자 1인을 합격자로 결정
- 점수가 동일할 경우 심사위원 간 합의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

4. 원서접수와 시험일정

가. 모집공고와 원서접수

- 공모기간 : 2019. 4. 15.(월) ~ 26.(금) / 12일간
- 원서접수 : 2019. 4. 25.(목) ~ 26.(금) / 2일간
- 접수방법 : 접수처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거창군 복지정책과(055-940-3143)

나. 서류심사 : 2019. 4. 30.(화)

다. 면접시험 : 2019. 5. 2.(목) 거창군청 중회의실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2019. 5. 3.(금) / 합격자 개별통보

마. 근무개시 : 2019. 5. 9.(목)

※ 위 일정은 거창군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자격

가. 일반 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공고일 현재 만 40세 이상인 자

나. 직무분야 자격요건(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4조)

-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자원봉사단체 : 자원봉사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
 - 자원봉사 관리업무 :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상담·교육,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직접 수행한 자
 - 종사한 자 : 자원봉사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직접 연관성이 없는 상급관리자는 포함되지 않음)
 -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주무장관) 및 사도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말함
 - 임원 : 이사 이상의 직책을 말함
- 상기 자격요건 하나만 충족을 하면 응시 가능

6.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별지 1호 서식) 1부.
- 나. 이력서(별지 2호 서식)와 자기소개서(별지 3호 서식) 각 1부.
- 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4호 서식) 1부.
- 라. 개인정보 동의서(별지 5호 서식) 1부.
- 마. 직무분야 자격요건 증빙자료 각 1부.
- 바.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이력사항 기재, 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주민등록초본은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함
- 사.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 아. 성범죄·아동범죄경력 조회동의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7. 기타사항

-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나. 시험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라.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증빙서 미제출, 연락 불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마.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복지정책과(☎940-3143)로 문의바랍니다.

응시원서

본인은 거창군 자원봉사센터장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9 년 월 일

거창군수 귀하

※응시번호		사 진 (반명합판)
응시직급	거창군 자원봉사센터장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전자우편		
(휴대)전화		



응시표 ()

※응시번호		응시직급	거창군 자원봉사센터장
성 명			
2019 년 월 일 거창군수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직급	거창군자원봉사센터장	성명	

나. 응시자격 ※ 응시분야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작성					
학 력	학교명	재학기간(연월)		전공	비고
	고등학교/대학교	0000.00~0000.00		000학	수료/학위 취득
경 력	근무기관(부서명)	기간 (년/월/일)	직위	담당업무	비고
	(최종경력부터 기재)	~			
자 격 증	종류	취득일		등록번호	검정기관
		00.00.00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

【작성요령】

- ※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 ※ 경력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로 확인 가능한 내용만 작성(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전일/시간제)
- ※ 학력 작성 시 고등학교-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작성
-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 이내로 작성

자 기 소 개 서

지 원 동 기	
성 장 과 정	
경 력 과 직 무 성 과	
기 타 사 항	
2019. . . . 응시자 : (인/서명)	

- ※ 분량은 A4 용지 3매 이내(신명조 13포인트)로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한글)을 이용하여 작성
- ※ 경력과 직무성과의 경우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임용되는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주요 성과목표별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성 명 :
- 생년월일 :

2019. . . 작 성 자 : (인/서명)

※ 분량은 A4 용지 2~3매 내외(신명조 13포인트)로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한글)을 이용하여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안내

거창군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직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직원 채용심사 관련 자료 수집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와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와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명 : (인/서명) 생년월일 :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4월 12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2. 개정이유

유용미생물 공급 일시, 무상공급 사유·신청방법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용미생물 공급 일시를 현 운영현황과 일치시킴(안 제8조)

(현행) 매주 2회 09시부터 15시까지

(변경) 매주 화요일·목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나.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사유 현실정에 맞게 변경함(안 제10조제1항)

다.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방법 보완함(안 제10조제2항)

라. 유용미생물 공급가격 공고시기 변경함(안 제11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 4. 12. ~ 2019. 5. 2.(20일간)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농업기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 50147)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농업기술과

- 전화번호 : 055)940-8203, FAX : 055)940-817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자치법규명 :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
----------	-------

제출일자	2019. . .
제 출 자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이유

유용미생물 공급 일시, 무상공급 사유·신청방법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유용미생물 공급 일시를 현 운영현황과 일치시킴(안 제8조)
 (현행) 매주 2회 09시부터 15시까지
 (변경) 매주 화요일·목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 나.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사유 현실정에 맞게 변경함(안 제10조제1항)
- 다.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방법 보완함(안 제10조제2항)
- 라. 유용미생물 공급가격 공고시기 변경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9조·제10조,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19. 4. 12. ~ 5. 2.
 - 나) 예고결과 :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 : 평가의뢰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운영·관리) ① 배양센터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 한다.

② 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군민”을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 단서 외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유용미생물을 매주 화요일·목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공급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 신청 이후에는 무상공급 대장을 적는 것으로 갈음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환경정화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공급가격) 군수는 공급가격을 거창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공급가격을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공급가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공고한다.

제12조·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u></p> <p>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배양센터는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② 군수는 배양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을 지원하여 운영한다.</p> <p>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u>군민</u>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u>군</u>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군민 이외의 자로부터 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p> <p>③~⑤ (생략)</p> <p>제8조(공급일시) <u>유용미생물은 매주 2회(09시부터 15시까지) 공급한다.</u> 다만, 배양기기 운영점검 기간에는 예외로 한다.</p> <p>제10조(공급장려) ① 유용미생물은 <u>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농가 3. 그 밖에 <u>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u> 	<p><u>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u></p> <p>제5조(운영·관리) ① 배양센터는 <u>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관리한다.</u> ② <u>배양센터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u></p> <p>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u>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u>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u>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u>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군민 이외의 자로부터 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③~⑤ (현행과 같음)</p> <p>제8조(공급일시) <u>군수는 유용미생물을 매주 화요일·목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 공급한다.</u> 다만, 배양기기 운영점검 기간에는 예외로 한다.</p> <p>제10조(공급장려) ① 유용미생물은 <u>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농가 3. 그 밖에 <u>친환경농·축산업, 환경정화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현 행	개 정 안
<p>② 유용미생물을 무상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u>제출하여야 한다.</u></p> <p><u>제11조(공급가격) 공급가격은 거창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군수가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u></p> <p><u>제12조(판매금액 입금) 유용미생물 판매금액은 당일 군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날 입금할 수 있다.</u></p> <p><u>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② 유용미생물을 무상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u>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 신청 이후에는 무상공급 대장을 적는 것으로 같음한다.</u></p> <p><u>제11조(공급가격) 군수는 공급가격을 거창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공급가격을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공급가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공고한다.</u></p> <p><u><삭 제></u></p> <p><u><삭 제></u></p>

[별지 제2호]

미생물 공급대장

20 . . .

연 번	이 름	주 소	연 락 처	신청 미생물	신청량 (ℓ)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관련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6. 3] [법률 제14305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가축분뇨,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폐농어업자재의 투기(投棄)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어업 용수, 대기 등 농어업 자원을 보전하고 토양 개량, 수질 개선 등 농어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어업 용수 오염 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와 제16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하. (생략)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18. 11. 1]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타법개정]

제21조(수납금의 납입)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을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金庫)에 납입하여야 한다.

1. 금고(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고의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2조, 제29조, 제50조 및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에서 같다)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 수납한 날의 다음 날
2. 그 밖의 경우: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15-0347(예산편성관련)

양산시 조례안에서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중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예산편성 권한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여 집행기관의 권능을 제약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추87 판결(예산편성관련)

[1] 조례로 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 또는 국·시비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생략~

가. (1)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확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구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시비보조금의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사후에 감시·통제할 수 있으나,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예산안 편성 또는 국·시비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등의 사무에 관한 집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 권한행사에 대한 의회의 사전 의결 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권한행사를 견제·제한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하위법규인 조례로써는 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 또는 국·시비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의 규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만약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이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현행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배양센터는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배양센터는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② 군수는 배양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을 지원하여 운영한다.

제6조(생산 및 수급계획)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에 주소 및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군민 이외의 자로부터 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유용미생물의 공급은 신청 즉시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일시) 유용미생물은 매주 2회(09시부터 15시까지) 공급한다. 다만, 배양기기 운영점검 기간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제11조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10조(공급장려) ①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농가
3.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유용미생물을 무상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급가격) 공급가격은 거창군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군수가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2조(판매금액 입금) 유용미생물 판매금액은 당일 군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날 입금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9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 미거주·반송함 투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04월 15일

거창군수

1. 제 목 : 2019년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9. 04. 15. ~ 2019. 04. 30. (15일간)
5. 공고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별도붙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2019년 간선임도(가조 사병-수월지구) 신설공사 공시송달 공고

2019년 간선임도신설공사 편입필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불분명 등 산주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4. 16.

거창군수

1. 사업명 : 2019년 간선임도(가조 사병-수월지구) 신설공사
2. 위치 : 가조면 수월리 산180-12번지 일원(24필지)
3. 사업량 : 임도개설 3.5km
4. 사업기간 : 2019. 4. ~ 2019. 12.
5. 편입필지 : 아래참조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7. 기타사항

- 본 임도개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추후 지목변경 및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토지보상이 없으며, 재산권행사 및 사후 관리에 일체의 피해가 없고 사업비 부담도 없습니다.
- 본 토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동의여부 등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산림과(055-940-34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9년 간선임도(가조 사병~수월지구) 신설공사 편입 조서(공시송달)

사업 구분	소재지				지 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읍	리	지번				성 명	주 소	
간선 임도 신설 공사	거창	가조	사병	산 48-1	임	57,075	360	이*주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수재길 226-48	
			수월	산 180- 12	임	3,363	324	서*숙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233, 109동 2004호	
			수월	산 182- 2	임	12,086	1,116	정*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매화로 92, 106동 802호	
			수월					박*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590길 100, 106동 802호	
			수월					반*순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5길 46, 104호 제1층	
			수월					반*규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8길 10-12, 105동 104호	
			수월					정*숙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38 그랜드아파트 102동 401호	
			수월	산 182- 33	임	3,312	324	김*옥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238번길 34, 103동 501호	
			수월	산 188- 17	임	8,163	708	최*진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영일로311번길 24	
			수월	산 188- 13	임	8,323	216	정*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2-9 신반포아파트 21동 206호	
			수월	산 188- 12	임	31,915	1,356	어*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74, 4층	
			수월	산 188- 11	임	7,206	264	양*선	서울특별시서초구마방로6길41,302호	

거창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따른 열람 공고

거창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4. 18.

거 창 군 수

1. 거창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가.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0	가지리 배수지	거창읍 가지리 산196-11일원	-	973	973	-	

나.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	가지리 배수지	○신설 ○위치 : 거창읍 가지리 산196-11번지 일원 ○면적 : 973m ²	○가지리 일원의 교촌, 성산, 개화, 중촌, 지내 등 고지대 마을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지를 군계획시설로 결정함

2.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4. 의견 제출방법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서면
으로 제출
5. 관계도면 : 실음 생략(열람장소 비치)
6. 기타 상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바랍니다.